

#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26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추진경과

- 2021. 6.21 ~ 7.23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(총24개국 32명)
- 2021. 8.04 ~ 8.05 명예시민 선정 심사위원회(서면심사) 개최  
(추천자 32명 중 9명 선정)

### 나. 선정결과 : 총 9명(남 7명, 여 2명) ※세부명단 별첨

- 국적별 : 8개국(※ 국가별 가나다순)

남아프리카공화국	1	우즈베키스탄	1	타지키스탄	1
네팔	1	인도	1	프랑스	2
벨기에	1	중국	1		

### 다. 향후일정(안)

- 2021.11.19. 「2021 명예시민증 수여식」 개최

## 라. 관련근거

### 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### 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### 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 김준태 (☎ 2133-5281)